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구 미 시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에 따라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이행을 위해 도로 조명등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야간 통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민간자본 투자금에 대한 상환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에 해당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구미시 관내 가로등 2,000등을 국비 포함한 시 예산과 민간 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나. 민간금융 투자금은 절감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 절감액으로 2019년 사업 준공 후부터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함

다. 사업명 : 「산업단지 내 LED조명 교체사업」

- 사업기간 : 2018.11. ~ 2019.3.
- 사업대상 : 산업단지(1~3공단) 내 가로등 2,000등
- 사업내용 : 나트륨등기구 250~400W → LED120~150W 교체
- 사업비 : 1,980백만원(국비290, 시비290, 민자1,400)
- 추진방법 : 관급자재(국·시비580, LED조명) - 조달구입
사업자 선정(민자, 1,400) - 전문기관 위탁

3. 사업비 및 예산절감

가. 사업비(민간금융연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민간자본	비고
사업비	1,980	290	290	1,400	

※ 국비 30%, 시비 30%, 민간금융 40% 이상(국비지원 조건)

나. 예산절감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절감			전력사용량 (kWh/년)
	계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교체전	393	292	101	2,367,959
교체후	114	114	0	922,318
절감액	279	178	101	1,445,641

※ 총 2,000등 LED조명등으로 교체 기준

다. 민간투자금 회수기간(상환기간)

(단위: 백만원)

총투자사업비	연간 절감액	투자대비 예상 회수기간
1,400	279	5년

4. 사업효과

- 도로조명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야간 도로환경 개선,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관리비 절감으로 시 재정에 기여

5. 추진계획 : 별첨

가. 산업단지 내 LED조명 교체사업(별첨)

나. 사업추진 절차 및 흐름도

- 사업추진 제안서 제출(위탁전문기관 → 구미시)
-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구미시 ↔ 위탁전문기관)
-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교체대상 범위, 추진계획 확정
(구미시 ↔ 위탁전문기관)
- 입찰공고안, 설계도서 작성 검토(위탁전문기관 → 구미시)
- 입찰공고, 서류심사, 낙찰자 선정(위탁전문기관)
- 낙찰자 계약사항 검토 및 계약(구미시)
- 사업추진, 감리 및 추진실적 보고(위탁전문기관)
- 준공 및 검수, 사업완료보고(위탁전문기관)
- 시설물 확인, 사후관리 보증서 등 관계서류인수(구미시)

다. 2019년도 추진계획

- 총사업비 20억원(국 3, 시3, 민간금융 14)
- 도로조명 취약지역에 대하여 LED조명 2,000등 교체 예정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제4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확보 580백만원(국비 290, 시비 290)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추진계획

산업단지 내 LED조명 교체사업 지역에너지절약사업(민간금융연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LED조명 교체 의무화
- 2018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 2.9억원 확보

I 사업개요

□ LED조명 교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향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도로조명 신규 설치, 교체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의무화
- 2016년부터는 민간금융과 연계한 LED도로조명 교체사업만 국비 지원(보조비율 30%)

□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 계획

- 2018년 확보한 5.8억원(국비2.9, 시비2.9)과 민간금융 1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8억원으로 가로등 2,000여 등을 교체

※ '18년 LED조명 교체시 연간 2.8억원의 유지보수비용(전기요금 및 자재비)과 61%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가능

II 도로조명 현황

□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2018.8월 기준)

구분	합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터널등
계	29,971	13,731	13,999	1,400	841

□ LED조명 교체 현황

(2018.8월 기준)

구분	합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터널등
LED등수	10,059	3,199	6,531	243	86
LED교체율	34%	23%	47%	17%	10%

III 추진계획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11. ~ 2019.3. (5개월)
- 교체대상 : 산업단지 내 가로등 2,000등
- 사 업 비 : 19.8억원 정도(국비 2.9, 시비 2.9, 민간금융 14)

□ 사업 추진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민간금융연계 방식으로 추진
- 예산 5.8억원(국·시비)은 시 자체 자재구입, 민간금융 14억원은 전문기관 위탁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 민간투자금은 2019년부터 에너지절약금액으로 매월 분할 상환

□ 행정 절차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을 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 필요

□ 전문기관 위탁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에 따라 계약사무 위탁 가능
 -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기관

□ 전문기관 위탁 시행의 필요성

- 시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조달단가와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높아짐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경제성 분석부터 사업완료 후 민간투자비 상환까지 전반적인 업무 지원

□ 전문기관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건을 충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LED조명교체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를 위탁 전문기관으로 선정코자 함

※ **한국광산업진흥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광(光)전문 특수법인으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광양시 외) 위탁사업 시행 실적 있음

IV 향후 추진일정

□ 앞으로 추진일정

- 2018. 9. : 사업계획 수립
- 2018. 10. : 시의회 동의
- 2018. 11. : 위탁 대상기관 협약 체결 및 경제성 분석
- 2018. 12. : 설계·입찰, 계약 및 착공
- 2019. 3.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 2019년도 추진계획

- 총사업비 20억원(국3, 시3, 민간금융 14)
- 도로조명 취약지역에 대하여 LED조명 2,000등 교체 예정

V 참고자료

□ 기대효과

구 분	연간 소요비용(백만원)			전력사용량 (kWh)
	계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교체전	393	292	101	2,367,959
교체후	114	114	0	922,318
절감액	279	178	101	1,445,641

□ 민간투자 대비 회수기간

총투자사업비 (천원)	연간절감액 (천원)	투자대비 예상 회수기간	
		기초금액 기준	낙찰율 고려
1,400,000	279,614	5.0년	4.4년

□ 기대효과 산출근거

○ 전기요금 절감 산출내역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용	계
당초	NH250W	1,577등×10,800원/월×12월 = 204,379,200원	291,940,200원
	NH400W	423등×17,250원/월×12월 = 87,561,000원	
변경	LED120W	1,577등×4,500원/월×12월 = 85,158,000원	113,710,500원
	LED150W	423등×5,625원/월×12월 = 28,552,500원	
절감액			178,229,700원

○ 자재비 절감 산출내역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비 절감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용	계
당초	NH250W	1,577등×49,000원/조×1회 = 77,273,000	101,384,000원
	NH400W	423등×57,000원/조×1회 = 24,111,000원	
변경	LED120W	0	0
	LED150W	0	
절감액			101,384,000원

○ 연간 절감액

전기요금 절감액(178,229,700원) + 자재비 절감액(101,384,000원)
= 279,613,70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생략)

② 법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 다. (생략)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소관 실·과		도 로 과
입 안 자	과 장	류 형 욱
	담 당	박 휘 근
	담 당 자	조 관 호 (480-5482)